

영유아 검진기간 연장 종료에 대한 사전 안내

그간 코로나19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 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검진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하였으나,

코로나19 일상 속 방역 대응 기조 및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, **2022년 12월 31일**로 영유아 **검진기간 연장을 종료** 할 예정이오니, 반드시 해당 차수 검진기간 내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다만,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**코로나19 확진** 또는 **치료로**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진기간 연장이 가능하니,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영유아 검진기간 연장 신청

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:

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연장되나 다음차수 시작 전일까지 연장

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 치료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:

다음 차수 시작 전일까지 연장

영유아 검진기간 연장 신청 방법

확진자 성명, 격리기간이 명시된 '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또는 확진자 조사 안내' 문자(보건소 발송), 처방전, 약국영수증 등 연장 증빙자료, 보호자 신분증, 자녀 인적사항 (성명, 주민등록번호)을 관할지사 모바일팩스, 일반팩스, 내방 등으로 접수

팩스번호 문의

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☎ 1577-1000

휴대폰 문자발송으로 모바일팩스보내기

휴대폰 문자발송에서 공단 모바일팩스번호로 문자 발송

The건강보험(웹)을 이용하여 모바일팩스 보내기

The건강보험 → 민원여기요 → 전체메뉴 → 팩스발송 → 모바일팩스보내기

모바일 팩스

휴대폰 문자메시지서비스(SMS)를 이용하여 공단 모바일팩스번호로 코로나19 연장 증빙자료(보건소문자 등)를 첨부 문자 발송하면 공단에 접수됨

2022년 9월 2일